응급의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부터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방법이나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응급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응급환자가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되는지 등 응급의료에 관한궁금증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의료 1
1. 응급의료 개관 4
1.1. 응급의료 알아보기 4
1.1.1. 응급의료의 개념 등 4
1.2. 응급의료 조치 등 6
1.2.1. 응급환자의 신고 등 6
1.2.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8
1.2.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9
2. 응급의료 이용 12
2.1.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12
2.1.1. 병원 이용 12
2.1.2. 약국 등 이용 14
2.2.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16
2.2.1. 구급차 이용 16
2.2.2. 개인차량 이용 18
2.2.3. 응급헬기 이용 20
2.3. 응급치료 받기 21
2.3.1.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21
2.3.2.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23
2.3.3.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23
2.3.4.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25
2.4. 응급치료 후 26
2.4.1. 의료비 등 납부 26
2.4.2.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28
2.4.3. 의료분쟁 30
3. 응급의료종사자 32
3.1. 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 32
3.1.1. 의료인 32
3.1.2. 응급구조사 33

1. 응급의료 개관

1.1. 응급의료 알아보기

1.1.1. 응급의료의 개념 등

응급의료 등 개념

응급의료란?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응급환자란?

▪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1.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증상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2.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응급의료종사자란?

▪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단 참조).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응급의료에 대한 의무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2. 응급의료 조치 등

1.2.1. 응급환자의 신고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신고 방법

▪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병원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제2호제가목).

1회 위반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3회 위반 과태료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 환자의 수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처치

응급처치란?

▪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다음과 같이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 기도폐쇄 · 마비환자 ·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 중독환자 · 심장마비 · 물에 빠졌을 때 · 심장질환이나 흉통 · 심한 화상	· 의식이 없는 경우 · 전기 손상 · 심한 출혈 · 자살기도 ·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분만 ·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기본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상황별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4.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제15조)
5.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등(「도로교통법」 제5조)
6.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7.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8. 인명구조요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
9.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10.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

11.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12.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선원법」 제2조제1호)

13.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14.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15. 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16.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수료증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1.2.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관광진흥법」 제52조)
9.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10.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1. 대합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12. 카지노 시설(「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3.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제4조)
14. 경주장(「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15.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16.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
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18. 전문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의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 응급장비 사용교육
-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 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장비의 사용여부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단서).

2. 응급의료 이용

2.1.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2.1.1. 병원 이용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란?

▪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또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나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신고한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③ 종합병원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 이를 위반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거목).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의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과 그러한 재난의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기경보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 부칙(법률 제17968호)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8조).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응급의료기관의 출입 및 체류 제한

응급실 출입 제한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1호의2).

응급실 체류 제한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의료기관 안내

응급실 찾기

▪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은 119안전신고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응급실-응급실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약국 등 이용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2항 본문).

>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 ※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 일반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4항).

※ 일반의약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9호).

-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의약품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국 찾기

▪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약국은 119안전신고센터(☎ 119)에서 안내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병원·약국-약국 찾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의 <의료정보-병원·약국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신고센터(☎ 119)에서 안내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의 의약품 구입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 안전상비의약품이란?

·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음의 의약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약사법」 제44조의4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4. 12세 미만 아동(「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6.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7.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2.2.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2.2.1. 구급차 이용

구급차의 개념 및 구비장비 등

구급차란?

▪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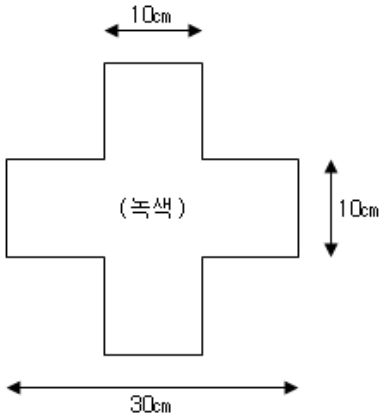
▸ 이를 위반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

▪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구급차의 기준 등

▪ 구급차는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다음과 같은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합니다(「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 그 밖에 구급차의 표시나 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내부표면, 내부장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하며, 구급차가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며,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이 다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 참조).

※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

▪ 또한,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

※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단서).

구급차의 이용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 이용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 이송업자나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제2호나목).

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이용 방법

▪ 구급차를 소유한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외래진료환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이송업체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등의 이송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하는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경마장(「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스키장이나 4륜 자동차경주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 및 바목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일정 조건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의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각 해당 기관의 운용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2쪽 참조).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8 제12호의2).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2.2.2. 개인차량 이용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긴급자동차로 취급

▪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과태료 면제

▪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 신호 또는 지시(「도로교통법」 제5조)
-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우측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차로통행(「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 전용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제한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교통법」 제34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

> ※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 1.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https://www.efine.go.kr)에 접속
> 2.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

2.2.3. 응급헬기 이용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쪽 참조).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이용

이용 대상

▪ 응급헬기는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출동 요청

▪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 그 밖에 산업체 응급의료종사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사람과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7쪽 참조).

▪ 출동 여부는 의학적 기준(대상 지역,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직 의사와 기계적 또는 환경적 기준(운항시간, 기상 상황, 항공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결정합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7쪽 참조).

2.3. 응급치료 받기

2.3.1.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 응급의료란?
>
> ·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 응급처치란?
>
>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나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개월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응급의료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원 전 단계에서는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5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제5항).

환자의 이송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3항).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4항).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감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또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위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은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호나목).

2.3.2.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의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 설명 및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 동의서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2.3.3.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절차

▪ 의료인의 판단

▸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의무기록의 제공

▸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이송절차

▪ 의료인의 판단

▹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의무기록의 제공

▹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치료 후-의료비 등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4.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간호법」 제6조)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 ※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 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화를 내면서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기구 등을 손괴한 사람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

2.4. 응급치료 후

2.4.1. 의료비 등 납부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조회·신청-진료비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식) 참조].

▪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민간 이송업자나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구급차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용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 ※ 위와 같은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7쪽 참조).

이송처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송처치료 영수증으로 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2.4.2.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청구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3.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1.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2.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미수금의 대지급 범위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미수금의 상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단).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후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제도안내-기타제도-응급대지급제도 참조>

※ 그 밖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4.3. 의료분쟁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그 밖의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와 관련한 기록을 말합니다.
  -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낮고 증거의 신빙성이 높으며,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조나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단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법」 제27조 및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 콘텐츠의 <의료분쟁 대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 콘텐츠의 <의료분쟁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응급의료종사자

3.1. 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

3.1.1. 의료인

의료인이란?

의료인의 개념

▪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의료인의 자격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조제1항).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함)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학교 중 위 1. 및 2.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 조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6조).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 간호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간호법」 제4조제1항).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학교 중 위 1.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의료인의 의무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15조).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2조제1항).

- 진료기록부 등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제1항).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제2항).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6조).

3.1.2.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시험 및 자격인정

▪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응급구조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본문).

> ※ 응급구조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

>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2).
>
> ※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 최초 신고: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 이후 신고: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예]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사이에 신고를 한 경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재신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예]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기 신고를 하여야 함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http://www.emt.or.kr)에서 직접 자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료과실만 해당), 제269조의 낙태,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 낙태, 제317조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구조사의 명칭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거목).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13).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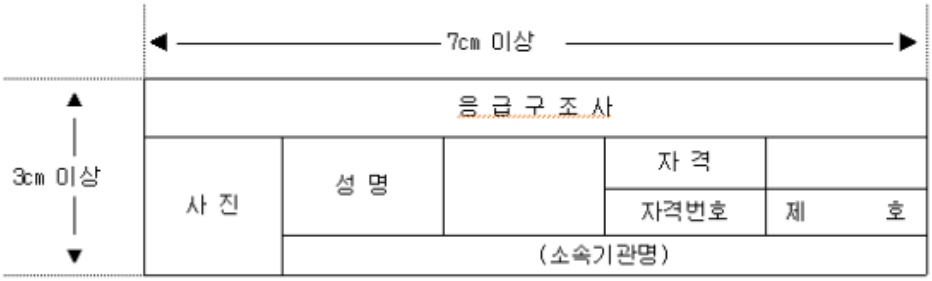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해야 합니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않고 이동해야 합니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비밀 준수 의무

▪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거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